



● 일시 2011년 12월 22일(목) 오후 3시 ~ 6시

< 목 차 >

□ 인사말

- 이용훈(주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5

□ 발제

- 김일수(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7
- 이호중(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5

□ 토론

- 한인섭(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1
- 이현(변호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70
-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77
- 류제성(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81
- 이발래(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팀장) 87

□ 참고자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89
- 신·구조문대비표 112

인사말

이용훈(주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3

1953

60

10

발제1

형법총칙 개정안에 대한 소견

김 일 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고려대 명예교수)

I.

○ 1953 9

○

2007 6

○

2

30

(“ ”)

○

-

-

-

-

-

5

II.

○ 5

1.

○

○

○

2.

○

41

9

4

○

○

○

○

○

○

41 ()

1)

1) . 449 , / . 2010. 570 , . 2008. 792 , . 1990. . 2008. 741

3.

○

○

4.

○

53

5.

○

○

(high crime risk)

(normal criminals)

(homini insecuritas)

(portfolio)

○

20

(von Liszt)

III.

1.

< _____ >	제1조(죄형법정주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

2)(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12 1 13 1

○

1

.3)

2.

1 () ①	2 (시간적 효력) ①

○

1 () , “ ”

1

2) ‘

18

1. , 2

3) , 3

1 () , 4 , 5. 6

111-3 ()

○ 1
 “ ” “ ”

3.

5 ()	
1.	제6조(보호주의)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2.	1. 87 90
3.	2. 92 101 103
4.	3. 105 106
5.	4. 225 230
6. 230 225	② 이 법은 대한민국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7. 238	
6 ()	

○ 5 () 6 ()
 ○ 1 2
 ○ 5 6
 ()

4.

$\langle \quad \quad \quad \rangle$	<p>7 ()</p> <p>.</p> <p>1. 119</p> <p>2. 207 , 208 212 (2 11)</p> <p>3. 214 , 218 223 (2 14 , 218)</p> <p>4. 287 289 , 291 , 292 294 (293)</p> <p>5.</p>

○

○

6 4) 1992

5)

4) 6 ()

1. ()

2. 307 , 308 1 4 , 309 2 310 .

3. . (316 c)

4. (232 233 a)

5.

6. 184 a, 184 b 1 3 , 184 c 1

7. (146 , 151 152), , (152 b 1

4) (149 , 151 , 152 , 152 b 5)

8. (264)

9.

5) 7 ()

1. 244 () , 246 (.)

2. 271 (.) . 272 (.) , 273 2 (.)

3. 288 () . 289 ()

5.

13 ()	11 (고의) 아니한 다. 다만,
14 ()	13 () (正常) (注意) 게을리 하여 경우에만

○

(dolus malus)

○

6)

92

『

』

7)

4. 295 () · 299 ()

5.

6)

38 (,)

15

7)

92

○ 「 11 ()
 11 ()

11 (고의) 다. 다만,	11 (고의) 의욕한 행위는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6.

15 () 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별하지 아니한다. 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별하지 아니한다.	12 ()

- 15 ①, ②
- 15 ①, 15 ②
- 15 ②
- 15 ① 12
1
13 () 11 ()

- 11 () , 11
- 12 ① , 12
- 12 ②

11 (고의) 다. 다만, 12 ()	12 (구성요건착오) ① 아니한다. 다만, ②

7.

15 () ②	14 (결과적가중범)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없을 때에는

- 15 () 2
- 15 2 “ ”
- “ ... ”

8.

--	--

18 ()	15 () 이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

○ 18

8).

9.

22 () ① ②	18 () ① ② 업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 1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17 2 3

○ 21 2

2

○

8)

13 ()

49 1

○ 21 ③

(17 ③).
(18 ③)

17 ③

10.

11 ()	〈조문 삭제〉

○ 11

○

○

9).

11.

10 () ① 心神障碍	22 (정신장애) ① 정신장애 행위의 불법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라 행위할 능력
②	② 정신장애 1 (微弱)
③	③ 스스로 정신장애의 상태를 일으켜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 한 자
2	

9) '瘖瘖'

1995

	1 2
9 () 14	23 (책임연령) 14

- 10 '心神障碍' 心身障碍者
-
- 3
- 9 10)

12.

16 ()	24 ()
	②제1항의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 유가 없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 2 “ ” “ ”

10) 19 (; Schuldunfähigkeit des Kindes) 14
41 (; 齡) 14

13.

26 ()	27 (중지미수) (自意)
27 ()	28 (불능미수)

- 27
- 11) 12)
- 13).
-

11)

2008 . 524 , . 2007. 523

12) '...
...' (1998. 10.23. 98 2313)

13) '...'

14.

<p><—————></p>	<p>제31조 [정범] ① 스스로 죄를 범한 자는 정범으로 처벌한다.</p> <p>②</p> <p style="text-align: right;">정범으로 처벌한다.</p>

○

14)

○

/

○

34 1 15)()

“ “ “ “ “ “ “ “

” ” ” ” ” ” ” ”

31 2

14)

15) 34 () . 2010. 436

15.

34 () ② 2 1	〈조문 삭제〉

- 34 2
- 16)

16.

33 () 3	35 () ① 32 34 ②

- 33
- 33

16) 34 2

○

33 1

1

2

○

17.

41 ()	40 ()
1.	1. 사형
2.	2. 징역
3.	3. 벌금
4.	4. 구류
5.	
6.	
7.	
8.	
9.	

○

9

○

4

○

(3S ; Short, Sharp and Shock),

○

○

5)

()

○

(“ 9 ”)

18.

51 () <① ③ >	<p>제46조(양형의 원칙) ① 형은 범인의 책임을 기초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p> <p>③ 벌금액은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p>

○

○

1

○

46

1

, 1

46 2

5

○

○

()

○

17)

○

46 () 3
3

○

2

○

46 ()

46 () ①	46 () ① 형의 양정은
②	범인의 책임을 기초로 한다. 형의 부과에 따른 범인의 재사회화와 범죄예방의 효과도 책임의 범위 안에서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	
2.	②
3.	
4.	1.
5.	2.
	3.
③	4.
	5. [삭제]
	③

19.

62 () ① 3	58 () ① 3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51	46 2		
1 5	1		
	5		
3	3		

○ 62

1)

2)

○

18)

18) 43 () (1) 2

1 3

25 ()

3

1

5

50

1.

2.

5

○

(59 19) ,

500

20.

48 () ①	79 () ①
1.	1.
2.	2.
3. 2	3. 2
	4.
	②
	1

○

41

132- 31 () 5
 19) 59 () 131- 10 131- 6
 1

○

48

○

1

2

○

○

i)

ii)

15 20)

9 21)

○

1992

48 () ①	79 () ①	79 () ①

20) 15 () 13

() 8

21) 9 () 8 1

() ()

)

4

<p>1.</p> <p>2.</p> <p>3. 2</p> <p>②</p> <p>③</p>	<p>1.</p> <p>2.</p> <p>3. 2</p> <p>4</p> <p>②</p> <p>1</p>	<p>1.</p> <p>2.</p> <p>3. 2</p> <p>4</p> <p>②</p> <p>1</p>
---	--	--

21.

<p>53 ()</p>	<p>49 (정상감경) ① (情 狀)</p> <p>1.</p> <p>2.</p> <p>3.</p>

	4. ②	48	1
--	---------	----	---

○ 53

22).

○ 23)

24).

○

25)

○ 53

26)

27)

“

”

28).

○

29),

30),

31)

22) . 2008. 760 , . 2007. 775 , . 2010. 581 , / .
. 2007. 520

23) ‘... 74 11% ...’ . 2010. 88
671

24) . 84

25)

26) 1985. 2. 26 84 2732, 84 429 ‘... 53

27) 1958. 9.12. 4291 389,

28) . 84 . 114

29) 46

46 a
49 1 1 360 1

1. ()

2.

30) 48 () 1 :

a 1 :

1. ,

2. ,

3. ,

4.

b.

c.

d. ,

e.

31) 33 ()

1.

2.

3.

4.

5.

6. ,

7.

34 () (1)
1. 18 21

2.

3.

4. 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

(9)

3

, , (,)
 (,)
 , 68
 1 ,
 , 4
 .

22.

(,)
 , , , (,)
) 32)
 , , ,
 (,) 1
).
 , , ,
 .

33)

32) (1984. 2005. 7.) 12,904 36.4% ,
 (2005. 8.) 668 61.8% 보호감호 폐
 지 이후 가출소자의 재범률이 급증한 점,
 강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위원회는 보호수용제도를 형법에 도입하기
 로 결정 .

34)

○

1:1

(10273 , 2010. 5. 4.)

○

35)

33) 12

34)

(88 5.8 89 44)

(1989. 3. 25) 5 1

1989. 3. 25.

35) 83 3()

1. 1 3 5 1

. 164 168 , 174 (164 1 , 165 , 166 1), 250
254 , 257 259 , 287 289 , 294 (287 289
) , 297 301 , 301 2, 302 , 303 , 305 , 333
340 342 (333 340)

2. 1 1 5 2

3. 5

1 1 2 “ ”

1 2 3 “ ”

1. . 164 168 174 (164 1 , 165 , 166 1)

75%

○
6

, , , , ,

○

2010. 10.

1 50

○

6

, ,

36)

IV.

○ 1953

○

1992

.	250	254								
.	257	259								
.	287	289	294 (287	289)				
.	297	301	, 301	2, 302	, 303	305				
.	333	340	342 (333	340)				
2	1									
	1	1								
1.										
2	1	1							2	1
			, 1	1						
3										
36)	83	5()						6	
	1								2	7

○

2007 6 11

3

2011 3 25

○

○

“ () 「 」 , ”
“ 「 」 . ”
○ , “ ”
“ ” 37)

12 1 “ ”
“ ”
「 () 」 , 「 」 , 「 」
“ ” , “ ”

2. () 「 」
○ 2005 () 「 」
○
●
● (7)
●
●
○
●
● “ ”
●
●

3. 38)
.

37) , () , 2011.4, 83-84 .
38) “ ” ()
“ ” ,
2010.12., 13-46 .

1)

○ () 「 」
, , “ ”
, “ ”
(83 4 1).

○

“2005

, 2005

103 (1)

178

”39)

“

”40)

○

,41)

39) 2010.9.30.

1 ().

40) , “ ”,
, 2010.8.25., 219 .

41) , “ : ”,
21 1 , 2010, 5-29 ; , “

2010

2)

○

○ 2010.4.15.

30 (50)

”

”

”

”

○

●

()

.42)

●

●

(反)

○

●

”

”

42) BVerfGE 35, 235.

○

43)

44)

○

43)

44) 1989.7.14. 88 5 ()
12 1

”(1989.7.14. 88 5 ,

: “ 5

13 1

●

● 13 1

●

● () 「 」

,45)

46)

○

45) 1996.11.28 95 20 ; 1991.4.1. 89 17-8510010912
46) “

51

1

” , 2004.1.12 ,

○

2005

. 2005

○

○

6

2005

○

○

”(66 1)
).

(“

„

○

○

4.

47)

○

(Sicherungsverwahrung) 66

2011 5 4

47) BVerfG, 2 BvR 2365/09 vom 4.5.2011.

○

○

2009.12.17.

7

○

○

)

•

•

•

•

•

•

•

○

7

1

○

.48)

○

14

2.

○

1950 11 4

6

“ 1

”

.49)

○

. 2010

197

139

, 1996

14

76

(OECD)

○

. 1996 11 28

“

.50)

48) “ ”,

, 2010.8.25, 147- 148 .

49) “

” - , 2010.12., 59 .

50) 1996.11.28, 95 1 .

○ 2010 2 25 9 4 ,
,
,51)

. 37 2

○ 37 2
“ ”

○
“ ”

○
,
,
,

1)

○ 14
?
1997 1998
1998 966
2008 1,120 16%
1988 1997 10 31%

○ ,52)

51) , 2010.2.25. 2008 23 .

: “

53)

○

“

() ?”

88.2%(67/76)

“ ”

“

“ ”

87%(67/77)

54)

○

“ ”

)

-

(

52) Hood & Hoyle, *The Death Penalty - a worldwide perspective*, 4.Ed., 2008, pp.317- 349 .

53) Hood & Hoyle, p.347.

54) Radelet & Lacoock, "Do executions lower homicide rates? : the views of leading criminologists", *The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Vol.99 No.2, 2009, p.489 , p.505 .

2)

○

○

“ ” ()

VI. (41)

1.

○ 41 “1 30
” “50 ”
. 2010.4.15. “1 15 ”

○

2.

○ 1 2008 6 8 “
’ ’ ’ ”
. ’ ’ 15 (25)

“

” .55) 2010 3 31

30 (50) ,

.56)

○

, 30 (50)

2010 3 31

○

-
2

.57)

2

○

)

●

1980

●

“ ”

“ ”

55) , “ ” , 2010.8.25, 145- 146 .

56) , “ ” , 146, 151 .

57) , “ ” - - , 2010.12, 8 .

3.

○ ,58) 2004 20 15 , , 20 , 24 ,59)

○ 20 (30) ,60) ○ , 20 (30)

V. (40 , 44)

1.

○ , “ 3S(short, sharp and shock)

○ “61) 40 ,

58) 40 . 59) , () : , , 2009, 93 . 60) , () : , , 2009, 89 . 61) , () , 2011.4, 49 .

2.

○ .62)
● 10 , 10) ((29)

● , 3
, 20

● , 30 5

○ 6
.63)

○ ,

VI. (42)

1.

○ 42

○ ,

62) , , 2011.4.7., 7
63) , () : , , 2009, 94 .

2.

○ , 24 () 37 2 , 「
」 25 ,
.64)

○ 2009.10.29. 5
.65)

●

●

3.

66)

○ (felony)
('felon disenfranchisement law') . 2006
, 48

, 36

.67)

○ 45 1 '1 ' 1
5 ' ' ' ' . 1

64) , , 2011.4.7., 9-11 .

65) 2009.10.29. 2007 1462 .

66) 11 1 , 2009, 329-362 . “ ”;

67) King, A debate of Reform : Felony Disenfranchisement Policy in the United States, 2006, p.1.

68)

69) (2 5)
(45 2 , 5).

(45 5).

○ 2005

Hirst v. The United Kingdom 70)

1983

3 1
48,000

1 3

○

“civil death”

○

()

68)

(80 , 80a), (81 , 83a),
(84 91)
(108c).

69)

45 5
6

70) Hirst v. The United Kingdom(74025/01), 38 E.H.R.R. 40 (ECHR).

○

42

43

42

VII.

(49)

1.

○

○

(49 1) 4

- (1)
- (2)
- (3)
- (4)

2.

○

53

○

○

“ ~ ”

• ()

• - -

○ , ,

○ 48, 48a 8 34 19 34 , 49 4

○ 2 () 3 () 1 4 ()

73) 2004.6.24. 2003 53

4 ()

○ 4 ()

●

●

○

3.

○

○

VIII. :

2007

.74)

2008 9 (“ ”)
 2 , 30 .
 「 」 2011 7
 , 2010.4.15. (2010.10.16.)
 30 (50) . 30-50

2008

”

”

(),

2 “ ” 30

5

74)

(2010.7.15.), 35- 97

“ / ”

토론1

유기징역형의 상한 — 근본적인 재조정 필요하다 —

한인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0 (50) 2010

① 15 , 25

② () , 20 , 30

(,)

I.

㉠-1953 42 75) 15 , 25

㉡-

(15) , ㉢ ㉣

㉤ , ㉥

㉦-1992 15 25

㉧- < >(“ ”) ,

75) (유기금고형도 마찬가지다. 다만 현재 “상한”을 중심으로 논의하므로 여기서는 그냥 징역형으로 편의상 쓰도록 한다.)

“ ” “ ” 15
20 “ ” (91)

“ ” 76)
15 20
25 30 5

④- 2007 6 < >
1 2008 6 8
“ ”
“ ”
“ .(, 145-146)⁷⁷⁾

④- 2010 3 31 <
> 30
50 ㉠
㉡
㉢
.()

76)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법개정연구회, 죄수`형벌분야 개정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무부/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형법개정의 쟁점과 검토, 2009.9.11. 22쪽.
77) 김성돈 발표, 형벌제도의 정비, 법무부, 형법총칙개정공청회, 2010.8.25, 145- 146.

(the get-tough penal policy)

2010.3.31.

2010.4.15.

(incapacitation)

, 2010.10.16.

2

㉔-

2010

㉔

(2010 4

)

㉕

㉔

.(, 146; 151).

, ㉔

(

)

㉔

”

“

<

()>

2010-216)

)

(

II. 30 /50

1.

- , "3 "

41 , "15 " 2 . 3 30

30 "1 " ()

-30 /50 100

, 50 , 40

20 ±5 30

. 30 ~50 ,

- 30 /50 , 30 /50

(2010) 25 , 30

2004 20

30

40

15 (), 20 (,

,) , 24 () .78) 50

78)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무부/한국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 형법개정의 쟁점과 검토(2009.9.11), 23쪽.

2.

-

-

4

< >

-

2010.3.31.

3.31.

-

“

60

25

15

50

60

”

“ ”

, 50

50

(

)

15 /25

“ ”

-

(

)

15

15~30 (25~50)

“ ” “ ” () “ ”

	237 (192 , 20 , 25)
	223 (193 , 13 , 17)
	218 (201 , 4 , 13)
	203 (143 , 36 , 24)

㉠㉡㉢

, ㉣

20

/30

㉤

3.

20

20 ~25

() 20

±5

4 ⇒3

⇒2 ⇒1

. 4 1

15

15

~25 , 30 /50 15 15

30 , 50

15 ~30 , 30 ~50

2 , 25

42000

(penal populism)

.79)

4

()

2010년 이전 형법	2010년형법 (2010.4.15.공포) (시행 2010.10.16)	법무부 개정시안 (2010.10)	학계:형법개정연구회안 (2009.12.)	필자의 안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제41조 (징역의 기간) ①징역은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제42조(자유형)자유형은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이상 20년이하로 한다. 다만 자유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30	제**조 (징역의 기간) ①징역은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20년 이하로 한다. ⁸⁰⁾ ②유기징역에 대해 형을

79) 한인섭, 최근 미국의 수감인구의 폭증—얼마나? 왜?, 교정, 2005년 11월호, 88- 111.

변호사 이현(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I.

1953

(') .

II.

1.

9 4 ,

2.

4. (11)

11

2 1

5. (27 , 28)

6. (40) :

41

9

(1)

2010. 2.

“ ①
(110 4

), ②

37 2

, ③

, ④

5

”

(2)

(3)

(4) :

(5) :

7. (76 , 82)

(1)

(2)

3 5

8. (46)

9. (58)

1-3

10. (49)

()

4

①

, ②

, ③

① 2010. 8

“5.

5

, ②’

, ③

11.

(83 83 11)

12 1

6

4.

(46 1
(83 2

18

토론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1304호)에 대한 의견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1.

○

“

”

“

,

”

,

,

○

,

,

○

,

,

○

,

,

,

2.

1)

○

“

,

,

,

,

○

.”

.

”(, 『
, 2010)

-

』,

○

.

.

.

3)

○

.

○

,

.

,

.

.

○

.

.

.

.

,

○

.

.

4)

○

.

○

.

.

.

○

.

,

5)

3.

토론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04호)에 대한 의견

류제성(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I.

- , .
-
- “ ’ ’ ”
- (83), (83 3 83 8).
-
- (40)
- “1 30 ” “50 ” (
- 41)
- 53 ‘ ‘ (49)
- (54)
- (58)

II.

1.

(1)

- 2005.7
- “
- .
- ” (1996.11.28. 95 20, 1991.4.1. 89 17 · 85 · 100 · 109 · 12
-) ()

- ()
-
-
-

(2)

- ' ' .
- ' .
- ()

(3) ()

-
- 2010.9.30. 1 ()
- () “ ” (83 4)
- ()

(4)

○ 2005

-
-
-

12

10

○

○

6

(5)

○

, 2002

1998

, 2004

○

2009. 12. 17.

, 2011. 1. 13.

2011. 5. 4.

2.

○

()

()

○

,

,

,

○ () ,

○ ()

3.

○ 2010.2.25. “ :”() “ :”() “

“() .

○ “ ,

” (2003.6.13. 2003 924)

○ 37 2

○ .

4.

○ 2010.4.15.

○ , . ,

30 , 50 5 , 50

2010.4.

5.

() ,

49 1 4 ,

토론5

형법총칙 개정에 대한 의견

이발래(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팀장)

-별지 제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1304
----------	-------

제출연월일 : 2011. 3. 25.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1953년 제정된 이래 개정이 거의 없었던 총칙 부분을 그동안 축적된 판례, 발전된 형법이론 등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사회 변화에 따른 국민의 법의식과 현행법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인류공통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국제적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방법,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등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죄형법정주의(안 제1조)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의적 법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명문화함.

나. 세계주의(안 제7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폭발물 사용, 통화 위조, 위조통화의 취득 등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제적 범죄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아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 규정 삭제(현행 제11조 삭제)

농아교육의 발달에 따라 농아자도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아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 규정을 삭제함.

라. 부작위범(안 제15조)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

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범행에 이르는 자에 비하여 죄질이 가벼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마. 과잉방위에 따른 면책사유(안 제17조제3항)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벌하지 아니하는 사유에서 ‘홍분’을 제외하여 과잉방위의 면책사유를 엄격히 함.

바. 긴급피난(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긴급피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상의 범위를 위난에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 축소하고 그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벌하지 아니하는 사유에서 ‘홍분’을 제외하여 과잉피난의 면책사유를 엄격히 함.

사.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안 제22조제3항)

스스로 정신장애의 상태를 일으켜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신장애로 인한 감면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백히 함.

아. 법률의 착오(안 제24조)

자기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誤認)한 자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자. 정범(안 제31조)

공범은 정범을 전제로 성립될 수 있으므로 정범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간접정범의 경우 그 정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함.

차.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2항 삭제)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규정은 실무상 적용례가 거의 없고, 지위를 이용하여 교사하거나 방조하였다고 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형의 가중 규정을 삭제함.

카. 공범과 신분(안 제35조)

신분에 의하여 구성되는 범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에는 신분이 있는 자와 책임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분이 없는 자의 형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분으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자는 신분으로 인하여 가중되거나 감경되지 아니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책임이 개별화됨을 명백히 함.

타. 형의 종류(안 제40조)

실무상 잘 활용되지 아니하거나 형의 부수적 효과에 불과한 금고, 자격정지, 자격상실, 과료 및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여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벌금, 구류 등 4개 종류로 간소화함.

파. 양형의 원칙(안 제46조)

형은 범인의 책임을 기초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문화함.

하. 친고죄에서의 자복(안 제47조제2항)

고소 또는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에 행위자가 고소권자, 고발권자에게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거. 정상감경(안 제49조)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정상감경 사유를 구체화함.

너. 선고유예(안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선고유예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2)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감명령의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함.

더. 집행유예(안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게 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특히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유예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 2)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외에 치료 또는 피해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치료명령 또는 피해회복명령의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하거나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추가·변경할 수 있도록 함.

러. 징역(안 제64조제1항)

금고형이 삭제됨에 따라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되, 필요한 경우 교정처우를 행하도록 하여 징역의 집행방법을 수형자에 따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함.

머. 시효의 정지(안 제76조)

국외 체류로 인한 형의 미집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형을 집행받지 아니한 자가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버. 몰수(안 제79조, 제81조 및 제82조)

- 1) 몰수의 대상을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고, 몰수의 대상에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범죄행위의 보수로 취득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을 제외하는 한편, 범죄행위의 보수로 취득한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이 몰수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2)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에는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몰수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

서. 보안처분(안 제83조)

보호수용, 치료수용,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의 종류를 규정하여 보안처분제도를 이 법률에 편입함.

어. 비례성의 원칙(안 제83조의2 신설)

보안처분의 선고와 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례성의 원칙을 명문화함.

저. 보호수용(안 제83조의3부터 제83조의8까지 신설)

- 1) 상습범에 관한 규정 및 누범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방화, 살인 등의 죄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3회 이상 선고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안에 방화, 살인 등의 죄를 고의로 범하여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죄에 관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수용을 선고하도록 함.
- 2) 보호수용은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여 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근로는 피보호수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함.
- 3) 보호수용을 선고한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기 6개월 전에 뉘우치는 빛, 교정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수용 집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 결과 보호수용 집행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결로 2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호수용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처. 치료수용(안 제83조의9부터 제83조의11까지 신설)

- 1) 정신장애를 이유로 벌할 수 없거나 형이 감경되는 자가 징역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마약을 주입하는 등의 습성이 있거나 중독된 자가 그와 관련하여 징역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자가 징역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로서 치료수용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치료수용을 선고하도록 함.

2) 치료수용은 치료수용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되, 치료수용의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의료기관이나 친족, 그 밖에 친족을 대신하여 피치료수용자를 보호·치료할 수 있는 자에게 치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의 편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총칙

제1편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죄형법정주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조(시간적 효력)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신법(新法)을 적용한다.

③ 재판 확정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3조(속지주의)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속인주의)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기국주의)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6조(보호주의)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2.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및 제103조의 죄
3. 제105조 및 제106조의 죄
4. 제225조부터 제230조까지의 죄

②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세계주의)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제119조의 죄
2. 제207조, 제208조 및 제212조(제211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제214조, 제218조 및 제223조(제214조, 제218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4.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1조, 제292조 및 제294조(제29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5. 대한민국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조약에 따라 처벌하는 범죄

제8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죄를 범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다음의 “第2章 罪” 및 “第1節 罪의成立과刑의減免”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총칙의 적용) 이 법 총칙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다음에 “제2장 죄” 및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을 각각 삽입한다.

제10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사실의 착오)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과실) 정상(正常)의 주의(注意)를 기울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제14조(결과적 가중범) 결과로 인하여 형이 무거운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없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15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따라 처벌한다. 이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16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同時) 또는 이시(異時)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제17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또는 당황으로 인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8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에 대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法定節次)에 따라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따라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 정당한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정신장애) ① 정신장애로 행위의 불법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라 행위 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정신장애로 제1항의 능력이 미약(微弱)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③ 스스로 정신장애의 상태를 일으켜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 한 자의 행위에 대

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4조(법률의 착오) ① 자기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誤認)한 자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4조 다음의 “第2節 未遂犯”을 삭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5조 다음에 “제2절 미수범”을 삽입한다.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着手)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7조(중지미수) 범인이 자의(自意)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28조(불능미수)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한다. 이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에서 정한다.

제29조 다음의 “第3節 共 犯”을 삭제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예비, 음모) 범죄를 예비하거나 음모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제30조 다음에 “제3절 정범과 공범”을 삽입한다.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정범) ① 스스로 죄를 범한 자는 정범(正犯)으로 처벌한다.

②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2조(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3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教唆)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교사자는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34조(방조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幫助)한 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한다.

제34조 다음의 “第4節 累 犯”을 삭제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공범과 신분) ① 신분에 의하여 구성되는 범죄에 그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분이 없는 자의 형은 감경할 수 있다.

② 신분에 의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자는 신분으로 인하여 가중되거나 감경되지 아니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35조 다음에 “제4절 경합범”을 삽입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 또는 징역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으로 한다.

제36조 다음의 “第5節 競合犯”을 삭제한다.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경합범과 처벌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서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장기(長期)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의 하한이 다른 죄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다른 죄에 정한 형의 하한을 그 형의 하한으로 한다.
3. 각 죄에서 정한 형이 무기징역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 병과한다.

제38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여러 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 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을 집행할 때에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通算)한다.

제39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39조 다음에 “제3장 형” 및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을 각각 삽입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형
2. 징역
3. 벌금
4. 구류

제40조 다음의 “第3章 刑” 및 “第1節 刑의種類와輕重”을 각각 삭제한다.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징역의 기간) ① 징역은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 ② 유기징역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 그 장기는 50년까지로 한다.

제42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 사형,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지배인, 그 밖에 법인의 업무에 관한 감사인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 ② 유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될 때까지

- 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이 정지된다.
- 제43조(벌금) 벌금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10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제44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 제45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0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그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의 경우에는 죄질과 범정(犯情)에 따라 경중을 정한다.
- 제45조 다음에 “제2절 형의 양정”을 삽입한다.
-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6조(양형의 원칙) ① 형은 범인의 책임을 기초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품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와의 관계
 3. 범행의 동기, 목적, 방법과 결과
 4. 범행 후 범인의 태도와 정황
 5. 형의 부과에 따른 장래의 범죄 예방 및 범인의 재사회화
 ③ 벌금액은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제47조(자수, 자복) ① 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고소 또는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 고소권자, 고발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48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형을 감경하는 경우: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
 2. 무기징역을 감경하는 경우: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
 3. 유기징역을 감경하는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벌금을 감경하는 경우: 그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5. 구류를 감경하는 경우: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②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 제49조(정상감경) ①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여러 개 있더라도 거듭 감경할 수 없다.
 1.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피고인의 노력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
 4.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② 정상감경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50조(선택형과 정상감경)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 제50조 다음의 “第2節 刑의量定”을 삭제한다.
-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1조(가중·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가중·감경한다.
 1. 각칙 조항에 따른 가중

2. 법률상의 감경
3. 경합범 가중
4. 정상감경

제52조(미결구금일수의 통산) ①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이하 “미결구금일수”라 한다)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벌금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입 시 미결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벌금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제53조(판결의 공시) 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제53조 다음에 “제3절 형의 선고유예”를 삽입한다.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제4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누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징역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55조(선고유예의 조건)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와 원호(援護)가 필요할 때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감명령은 선고유예기간 안에 집행한다.

제56조(선고유예의 실효)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②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감명령을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정도가 무거울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57조(선고유예기간 경과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그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하고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면소된 것으로 본다.

제57조 다음에 “제4절 형의 집행유예”를 삽입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제4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게 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특히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③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58조 다음의 “第3節 刑의宣告猶豫”를 삭제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집행유예의 조건)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치료 또는 피해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한다.

제59조의2를 삭제한다.

제60조 및 제6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1조(집행유예의 취소와 조건의 추가·변경)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치료명령 또는 피해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정도가 무거울 때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하거나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추가·변경할 수 있다.

제61조 다음의 “第4節 刑의執行猶豫”를 삭제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집행유예기간 경과와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2조 다음에 “제5절 형의 집행”을 삽입한다.

제62조의2를 삭제한다.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제64조(징역과 구류) ①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필요한 경우 교정처우를 행한다.

②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제65조(벌금의 납입) ①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完納)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을 하게 한다.

제65조 다음의 “第5節 刑의執行”을 삭제한다.

제66조 및 제6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제67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액과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공제한다.

제67조 다음에 “제6절 가석방”을 삽입한다.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누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벌금이 병과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69조(미결구금과 가석방) ① 형기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가석방하는 경우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② 벌금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제68조제2항에 따라 병과된 벌금을 납입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

제70조(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은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1조 다음의 “第6節 假釋放”을 삭제한다.

제72조 및 제7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 또는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3조(가석방기간 경과의 효과)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제73조 다음에 “제7절 형의 시효”를 삽입한다.

제73조의2를 삭제한다.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을 면제한다.

제75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

1. 사형: 30년
2. 무기징역: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 5년
6. 벌금: 3년
7. 구류: 1년

제76조(시효의 정지) ①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가석방, 그 밖에 집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시효는 형을 집행받지 아니한 자가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제76조 다음의 “第7節 刑의時效”를 삭제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경우에, 벌금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경우에 중단된다.

제77조 다음에 “제8절 형의 실효”를 삽입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형의 실효) ① 형의 선고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징역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구류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 효력을 잃는다.

1. 3년을 넘는 징역: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 5년
3. 벌금: 2년

② 징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였을 것
2. 피해배상이나 그 밖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3. 사회복귀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제78조 다음에 “제9절 몰수”를 삽입한다.

제79조 및 제8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몰수의 대상) ① 범인이 소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
2.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것
3.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것
4. 범죄행위의 보수로 취득한 것

②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제80조(추징과 폐기) ① 제79조에 따라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를 몰수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제80조 다음의 “第8節 刑의消滅”을 삭제한다.

제81조 및 제8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몰수 등의 특례) 제79조에 따른 몰수(제80조제2항에 따른 일부 몰수를 포함한다) 및 제80조제1항에 따른 추징은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선고할 수 있다.

제82조(몰수·추징의 시효) ①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그 집행이 면제된다.

②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된다.

제1편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보안처분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보안처분의 종류) 보안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수용
2. 치료수용
3. 보호관찰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2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비례성의 원칙) 보안처분은 행위자가 범한 죄, 행위자가 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죄의 중요성 및 행위자가 야기할 위험성의 정도에 비례하지 아니하게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83조의3(보호수용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수용을 선고한다.

1. 다음 각 목의 죄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3회 이상 선고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안에 다음 각 목의 죄를 고의로 범하여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가. 제164조부터 제168조까지,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4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3조부터 제340조까지 및 제342조(제333조부터 제340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2. 제1호 각 목의 죄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안에 실형을 선고받은 죄와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보호수용을 선고받은 자가 그 수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안에 보호수용을 선고받은 죄와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죄를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실형”이란 징역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경우의 형을 말한다.
 -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죄”란 전후의 범죄관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164조부터 제168조까지 및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상호간
- 나.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의 죄 상호간
- 다.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 상호간
- 라.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및 제294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상호간
- 마.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상호간
- 바. 제333조부터 제340조까지 및 제342조(제333조부터 제340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상호간

2.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죄와 그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상호간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형기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형기는 선고형으로 한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감형한 경우에는 최초로 감형된 형기로 한다.
2.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죄가 경합되어 있고 그 죄에서 정한 형이 가장 무거운 경우에는 선고형의 2분의 1을 형기로 하되, 제1항제1호 각 목의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초과할 수 없다.
3.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단기를 형기로 한다.

제83조의4(보호수용의 내용) ① 보호수용은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여 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근로는 피보호수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부과한다.

② 보호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3조의5(보호수용의 집행유예) ① 보호수용을 선고한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기 6개월 전에 누우치는 빛, 교정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수용 집행을 필요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보호수용 집행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결로 2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호수용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83조의6(보호수용 집행유예의 실효) 제83조의5제1항에 따라 보호수용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제83조의3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호수용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83조의7(보호수용 집행유예의 취소) 제83조의5에 따라 보호수용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제83조의19제1항제2호에 따라 개시된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제83조의8(보호수용 집행유예기간 경과의 효과) 보호수용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보호수용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83조의9(치료수용의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치료수용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치료수용을 선고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정신장애자가 징역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2.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질 또는 알코올을 식음, 흡입, 흡연 또는 주입하는 습성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가 그 습성이나 중독과 관련하여 징역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3.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자가 징역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가.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제83조의10(치료수용의 내용) ① 치료수용은 치료수용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② 제83조의9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치료수용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제83조의9제2호에 따른 치료수용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3조의11(치료위탁) 치료수용의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의료기관이나 친족, 그 밖에 친족을 대신하여 피치료수용자를 보호·치료할 수 있는 자에게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1. 치료수용만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시작된 후 1년
2. 치료수용과 형이 병과된 경우: 형기에 상당하는 치료수용기간

제83조의12(가출소·가종료) ① 보호수용 또는 치료수용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수용성적 또는 치료경과가 양호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보호수용의 가출소 또는 치료수용의 가종료를 할 수 있다.

② 보호수용의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한 가출소 여부는 집행개시 후 1년마다 심사하여야 하고, 치료수용의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한 가종료 여부는 집행개시 후 6개월마다 심사하여야 한다.

③ 보호수용 집행개시 후 1년 또는 치료수용 집행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수용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수용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의 신청에 의하여 가출소 또는 가종료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④ 보호수용이 선고된 수형자가 가석방된 후 그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형기를 경과한 경우에는 가출소의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

⑤ 가출소 또는 가종료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으로 보호수용 또는 치료수용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호수용 또는 치료수용의 집행 면제 여부는 가출소 또는 가종료 후 6개월마다 심사하여야 한다.

제83조의13(치료위탁·가출소·가종료의 취소) ① 치료위탁·가출소·가종료된 자가 고의로 징역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제83조의19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개시된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치료위탁·가출소·가종료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소된 치료위탁·가출소·가종료의 일수는 수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3조의14(보호수용과 치료수용의 결합) 제83조의3에 따른 보호수용의 요건과 제83조의9에 따른 치료수용의 요건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치료수용만을 선고한다.

제83조의15(보호수용 또는 치료수용 선고의 특례) ① 보호수용 또는 치료수용은 행위자에게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나 공소제기 없이 보호수용 또는 치료수용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용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수용기간에 산입한다.

제83조의16(수용의 집행순서 및 방법) ① 형의 선고와 보호수용의 선고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한다.

② 형의 선고와 치료수용의 선고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치료수용을 먼저 집행한다.

③ 여러 개의 보호수용 선고 또는 여러 개의 치료수용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선고한 수용만을 집행한다. 다만, 제83조의9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치료수용 선고와 제83조의9제2호에 따른 치료수용 선고 중 제83조의9제2호에 따른 치료수용이 후에 선고된 경우에는 제83조의9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치료수용을 집행한다.

④ 보호수용의 선고와 치료수용의 선고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치료수용을 먼저 집행한다.

⑤ 형과 동시에 선고된 치료수용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제83조의17(수용의 선고와 자격정지) 보호수용 또는 치료수용을 선고받은 자는 그 수용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될 때까지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83조의18(수용의 시효) ① 보호수용 또는 치료수용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을 면제한다.

② 시효는 수용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

1. 보호수용 및 제83조의9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치료수용: 10년

2. 제83조의9제2호에 따른 치료수용: 7년

③ 시효는 보호수용의 집행정지 또는 가출소, 치료수용의 집행정지,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집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④ 시효는 보호수용 또는 치료수용을 선고받은 자를 그 집행을 위하여 체포한 경우에 중단된다.

제83조의19(보호관찰의 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이 개시된다.

1. 보호수용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가출소하는 경우
 2. 보호수용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3. 치료수용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가종료되거나 치료위탁되는 경우
 4. 가출소되거나 가종료되지 아니하고 보호수용 또는 치료수용의 집행이 종료되는 경우
- ② 제83조의3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죄를 고의로 범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판결로 징역형 집행 종료 이후의 보호관찰을 함께 명할 수 있다.
- 제83조의20(보호관찰의 내용) ① 보호관찰은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지도·감독 및 원호를 위한 조치를 한다.
- ② 제83조의19에 따라 보호관찰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판결 또는 행정처분으로 제83조의21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83조의21(보호관찰의 기간) ① 제83조의19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호관찰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83조의19제1항제2호에 따른 보호관찰의 기간은 그 집행유예기간으로 한다.
- ③ 제83조의19제1항제4호에 따른 보호관찰의 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제83조의9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치료수용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원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83조의19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 제83조의22(보호관찰 집행의 면제) 제83조의19제1항제2호·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이 개시된 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기간이 1년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보호관찰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 제83조의23(가출소·가종료·치료위탁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경과의 효과) 제83조의19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호관찰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보호수용 또는 치료수용의 집행이 면제된다.
- 제83조의24(보호관찰의 종료) 제83조의19에 따른 보호관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된다.
1. 제83조의12제5항에 따라 보호수용 또는 치료수용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
 2. 보호관찰 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
 3. 가출소·가종료·치료위탁이 취소되어 수용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4. 보호관찰 기간 중의 새로운 범죄로 보호수용 또는 치료수용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 제83조의25(보안처분의 집행 등) 제83조의12제5항에 따른 집행 면제의 사유, 보호수용 또는 치료수용의 집행정지 요건 등 보안처분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83조의25 다음에 “제5장 기간”을 삽입한다.
-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4조(기간의 계산)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역수(曆數)에 따라 계산한다.
- 제85조(형기의 계산) ①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 ② 징역, 구류, 유치의 경우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86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첫날)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첫날은 시간 계산 없이 1일로 한다.
- 제1편제5장에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석방일) 형기만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제8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87조제2호 전단 중 “懲役이나禁錮”를 “징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懲役또는禁錮”를 “징역”으로 한다.

제88조 중 “無期懲役또는無期禁錮”를 “무기징역”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본문 중 “有期懲役이나有期禁錮”를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105조 중 “懲役이나禁錮, 10年以下の資格停止”를 “징역”으로 한다.

제106조 중 “懲役이나禁錮, 5年以下の資格停止”를 “징역”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 및 제2항 중 “懲役이나禁錮”를 각각 “징역”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 및 제2항 중 “懲役이나禁錮”를 각각 “징역”으로 한다.

제109조 중 “懲役이나禁錮”를 “징역”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중 “有期禁錮”를 “유기징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禁錮”를 “징역”으로 한다.

제112조 중 “禁錮”를 “징역”으로 한다.

제114조제2항 중 “懲役이나禁錮”를 “징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15조 중 “懲役이나禁錮”를 “징역”으로 한다.

제116조 중 “懲役이나禁錮”를 “징역”으로 한다.

제122조 중 “懲役이나禁錮또는3年以下の資格停止”를 “징역”으로 한다.

제123조 중 “懲役, 10年이하의 資格停止”를 “징역”으로 한다.

제124조제1항 중 “懲役과10年以下の資格停止”를 “징역”으로 한다.

제125조 중 “懲役과10年以下の資格停止”를 “징역”으로 한다.

제126조 중 “懲役또는5年以下の資格停止”를 “징역”으로 한다.

제127조 중 “懲役이나禁錮또는5年以下の資格停止”를 “징역”으로 한다.

제128조 중 “懲役과5年以上의資格停止”를 “징역”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 중 “懲役또는10年以下の資格停止”를 “징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懲役또는7年以下の資格停止”를 “징역”으로 한다.

제130조 중 “懲役또는10年以下の資格停止”를 “징역”으로 한다.

제131조제3항 중 “懲役또는10年以下の資格停止”를 “징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32조 중 “懲役또는7年以下の資格停止”를 “징역”으로 한다.

제136조제2항 중 “阻止하거나”를 “저지하거나”로 한다.

제139조 중 “懲役또는10年以下の資格停止”를 “징역”으로 한다.

제171조 중 “禁錮”를 “징역”으로 한다.

제17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禁錮”를 각각 “징역”으로 한다.

제189조제2항 중 “禁錮”를 “징역”으로 한다.

제203조를 삭제한다.

제2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4조(벌금의 병과) 제198조부터 제202조까지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09조의 제목 (“資格停止또는罰金の併科”)를 (“벌금의 병과”)로 하고, 같은 조 중 “10年以下の資格停止또는2千萬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220조의 제목 (“資格停止 또는 罰金の 併科”)를 (“벌금의 병과”)로 하고, 같은 조 중 “10年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2千萬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230조 중 “懲役이나禁錮”를 “징역”으로 한다.

제233조 중 “懲役이나 禁錮, 7年이하의 資格停止”를 “징역”으로 한다.

제236조 중 “懲役이나禁錮”를 “징역”으로 한다.
제237조를 삭제한다.
제23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5조 중 “罰金, 拘留또는科料”를 “벌금 또는 구류”로 한다.
제246조제1항 본문 중 “罰金또는科料”를 “벌금”으로 한다.
제248조제3항 중 “罰金또는科料”를 “벌금”으로 한다.
제256조를 삭제한다.
제257조제1항 중 “懲役, 10年以下의資格停止”를 “징역”으로 한다.
제260조제1항 중 “罰金, 拘留또는科料”를 “벌금 또는 구류”로 한다.
제264조 및 제26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6조제1항 중 “罰金, 拘留또는科料”를 “벌금 또는 구류”로 한다.
제267조 중 “禁錮”를 “징역”으로 한다.
제268조 중 “禁錮”를 “징역”으로 한다.
제27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79조를 삭제한다.
제280조 중 “前4條”를 “제276조부터 제278조까지”로 한다.
제28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第276條 내지 第280條”를 각각 “제276조부터 제278조까지 및 제280조”로 한다.
제282조를 삭제한다.
제283조제1항 중 “罰金, 拘留또는科料”를 “벌금 또는 구류”로 한다.
제285조를 삭제한다.
제286조 중 “前3條”를 “제283조 및 제284조”로 한다.
제288조제3항 및 제289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3조(영리 등을 위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제292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5조의 제목 (“資格停止또는罰金の併科”)를 “(벌금의 병과)”로 하고, 같은 조 중 “10年以下의資格停止또는2千萬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296조 중 “第293條第2項”을 “제293조”로 한다.
제304조 및 제30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06조 중 “第297條乃至第300條와第302條乃至第305條”를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로 한다.
제307조제1항 중 “懲役이나禁錮”를 “징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懲役, 10年以下의資格停止”를 “징역”으로 한다.
제308조 중 “懲役이나禁錮”를 “징역”으로 한다.
제309조제1항 중 “懲役이나禁錮”를 “징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懲役, 10年以下의資格停止”를 “징역”으로 한다.
제311조 중 “懲役이나禁錮”를 “징역”으로 한다.
제316조제1항 중 “懲役이나禁錮”를 “징역”으로 한다.
제317조제1항 중 “懲役이나禁錮, 10年以下의資格停止”를 “징역”으로 한다.
제325조제1항 중 “懲役또는10年以下의資格停止”를 “징역”으로 한다.
제331조의2 중 “罰金, 拘留 또는 科料”를 “벌금 또는 구류”로 한다.
제332조 및 제3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42조 중 “第329條 내지 第341條”를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3조부터 제340조까지”로 한다.

제344조 중 “第329條乃至第332條”를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및 제331조의2”로 한다.

제345조를 삭제한다.

제348조의2 중 “罰金, 拘留 또는 科料”를 “벌금 또는 구류”로 한다.

제351조를 삭제한다.

제352조 중 “第350條와 第351條”를 “제350조”로 한다.

제353조 및 제35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60조제1항 중 “罰金또는科料”를 “벌금”으로 한다.

제363조를 삭제한다.

제364조 중 “禁錮”를 “징역”으로 한다.

제365조제1항 및 제2항 중 “前3條”를 각각 “제362조 및 제364조”로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47조, 제49조, 제52조제1항, 제76조, 제82조, 제136조 및 제30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의 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시효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한 형의 시효는 이 법 시행일부터 정지된다.
- 제4조(몰수·추징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5조(보호수용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고받은 금고는 이 법에 따라 선고받은 징역으로 본다.
- 제6조(미결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까지는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유기징역”은 “유기징역, 유기금고”로, “벌금에 관한 유치”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로 본다.
- 제7조(1개의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
- 제8조(형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형, 징역, 벌금, 구류, 몰수를 선고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사형, 징역, 벌금, 구류, 몰수를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과료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9조(보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처분,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보안처분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형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6 225 230

7. 238

6 ()

7 ()

8 ()

2

1

6 ()

1. 87 90
2. 92 101 103

3. 105 106
4. 225 230

_____ 1

7 ()

1. 119
2. 207 , 208 212 (211)

3. 214 , 218 223 (214 , 218)

4. 287 289 , 291 , 292 294 (293)

5

8 ()

< >

< >

9 () 14

< >

< >

10 ()

_____ 2

11 ()

12 ()

13 ()

14 ()

15 ()

9 ()

_____,

_____.

2

1

10 ()

_____.

11 ()

_____.
_____,
_____.

12 ()

_____.

13 () () ()

_____.

14 ()

_____.

15 ()

_____.

16 ()

17 ()

18 ()

19 ()

20 ()

_____.

16 () ()

()

_____.

17 ()

_____.

()

2
_____,

_____.

18 ()

_____.

1

1 2 17
2 3 _____.

19 () ()

_____.

1

_____.

20 ()

_____.

21 ()

22 ()

_____ 2 3

23 ()

24 ()

_____ 2 _____

25 ()

21 ()

_____,

_____.

22 ()

_____.
_____ 1 ()
_____.

_____ 1 2
_____.

23 () 14

_____.

24 ()

_____ ()

_____.
_____ 1
_____.
_____.

< >

25 ()

_____,

_____.

< _____ >

26 ()

—

27 ()

28 (,)

29 ()

3

30 () 2

—

< _____ >

31 ()

2

26 ()

()

_____.

27 ()

()

_____.

28 ()

_____.

29 ()

_____.

< _____ >

30 (,)

_____.

3

31 ()

()

_____.

36 ()

5

37 ()

38 ()

1.

2

_____ 2

1

_____ ,

3

36 ()

_____ .

< >

37 ()

_____ .

1.

_____ :

2

_____ :

_____ ()

_____ 2 1 ,

_____ .

_____ .

3

_____ :

38 ()

_____ ,

_____)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1 2

_____ ()

—

39 (_____ , _____)

_____.

3

< _____ >

< _____ >

40 (_____) 1

3

1

41 (_____)

- 1. _____
- 2. _____
- 3. _____
- 4. _____

_____.

39 (_____) 1

_____.

3

1

40 (_____)

- _____.
- 1. _____
- 2. _____
- 3. _____
- 4. _____

< _____ >

< _____ >

41 (_____)

_____, 1 30

50

5 _____

6 _____

7 _____

8 _____

9 _____

42 (_____)

_____ 1

30 _____

_____ 5

0 _____ .

43 (_____ , _____)

_____ , _____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 _____

1 3 _____

44 (_____)

_____ 1 15

45 (_____) 5 _____ .

_____ , _____ 5

42 (_____ , _____)

_____ , _____

_____ .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 _____ , _____

1 1 3 _____

_____ .

43 (_____) 10

_____ , _____ 10

_____ .

_____ .

44 (_____) 1 30

_____ .

45 (_____) _____ 40

_____ .

_____.

< _____ >

46 () 1 30

47 () 2 5

_____.

48 ()

1. _____

2. _____

3. 2 _____

_____,

_____.

1 2

() _____.

2 _____

46 ()

_____.

_____.

1. _____, _____, _____

2. _____

3. _____, _____, _____

4. _____

5. _____

_____.

47 (,)

_____.

_____,

() _____.

_____.

48 ()

_____.

1. _____ : _____ 20

_____ 50 _____.

2 _____ : 10

_____ 50 _____.

3 _____ :

_____ 2 1 _____.

4 _____ : _____ 2

_____ 1 _____.

_____, _____
_____.

49 ()

50 ()

41

2

2

51 ()

1. _____, _____, _____
- 2 _____
- 3 _____,
- 4 _____

5 _____ : _____ 2
_____ 1 _____.

_____.

49 () ()

_____.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48 1

_____.

50 () 1

_____.

< >

51 ()

1. _____.
- 2 _____
- 3 _____
- 4 _____

52 (,)

53 ()

< >

54 () 1

55 ()

1. _____ 20
 50
2. _____
 10 50
3. _____
 2 1
4. _____ 7
5. _____ 2
 1
6. _____ 2 1

52 ()

 (“
”) _____ ,

 1
 1 _____ ,
 1 _____ .

53 ()

_____ .
_____ .

3

54 () 1

 300
 46 2

_____ .
_____ .
_____ .
_____ .

55 ()

 ()

_____ .
 1 1
_____ .
_____ .

7. _____ 2 1

8 _____ 2 1

56 ()

1. _____

2 34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6 _____

57 ()

_____, _____,

_____ 1 _____,

_____, _____

_____ 1 _____

< _____ >

58 ()

56 ()

_____ 55 1 _____,

57 ()

_____ 2 _____

_____ 4 _____

58 () 3

_____ 500 _____

_____ 46 2 _____

_____ 1 5 _____

_____ 3 _____

_____ 1 _____

3

59 () 1

51

59 2()

1

1

60 ()

2

61 ()

59 2

4

< >

59 ()

1

< >

60 ()

61 () 59 1

< >

62 () 3

51

1 5

3

< >

62 2(,)

1

63 ()

64 ()

62

62 2

65 ()

62 ()

5

< >

63 ()

()

64 ()

65 ()

30

_____ 5 _____

66 ()

67 ()

< _____ >

68 ()

69 ()

30

1 3

30 1

70 ()

_____,
()

_____.
1

3

_____.

< _____ >

66 ()

_____.

67 ()

()

_____.

_____ 6 _____

68 ()

20 , 3 1

_____.

1

_____.

69 ()

_____.

68 2

_____.

70 ()

_____ 10 _____.

71 ()

6 _____

72 ()

_____ 20
_____, _____ 3 1
_____.

73 ()

_____ 2

< >

73 2()

_____ 10
_____,
_____, _____ 10
_____.

_____,
_____.

10 _____.

_____,
_____.
_____.

71 ()

_____.
_____.

< >

72 ()

_____.
_____.

73 ()

_____.
_____.

7 _____

< >

74 ()

75 ()

_____.

76 ()

_____.

2

7

77 ()

< >

78 ()

- 1. 30
- 2. 20
- 3. 10 15
- 4. 3 10

74 ()

_____.

75 ()

_____.

- 1. : 30
- 2. : 20
- 3. 10 : 15
- 4. 3 : 10
- 5. 3 : 5
- 6. : 3
- 7. : 1

76 ()

_____, _____

_____.

< >

77 ()

_____, _____
_____.

8

78 ()

_____, _____
_____.

$$\begin{array}{r} \underline{\quad\quad\quad 10} \\ 5 \quad 3 \quad \quad \quad \quad 5 \\ \hline \underline{\quad\quad\quad 5} \\ 6 \quad 5 \quad \quad \quad , \quad \quad \quad , \quad \quad \quad \\ \hline \underline{\quad\quad\quad 3} \\ 7. \quad \quad \quad \quad \quad 1 \end{array}$$

< >

79 ()

80 () , ,

8

81 ()

$$\begin{array}{r} 1. \quad 3 \quad \quad \quad : 10 \\ 2 \quad 3 \quad \quad \quad : 5 \\ 3 \quad \quad \quad : 2 \end{array}$$

$$\begin{array}{r} \underline{\quad\quad\quad} \\ 1. \quad 1 \quad 1 \quad \quad 2 \\ \quad \quad 2 \quad 1 \end{array}$$

2

3

9

79 ()

1.

2

3 2

4

1

80 () 79

()

(),

< >

81 () 79

7

82 ()

_____ 2 1

4

83 ()

< >

< >

(80 2

) 80 1

82 ()

_____ 5

4

83 ()

1. _____
2. _____
3. _____

83 2()

83 3()

1. _____ 1
- _____ 3
- _____ 5
- _____ 5
- _____ 1

_____ 164 168 , 174

(164 1 , 165 , 166

1 _____), 25

0 254 , 257

259 , 287 289
294 (287 289
) , 2
97 301 , 301
2 302 , 303 , 305 , 3
33 340 342
 (333 340
)

2 1 1

5
2

3

5

1 1 2 “ ”

1 2 3 “ ”

1.

164 168 174
 (164 1 , 165 , 166
1)

250 254

257 259

287 289 294
 (287 289
)

297 301 , 301

< _____ >

< _____ >

< _____ >

2 302 , 303 305

333 340 342
(333 340

)
2 1

1 1

1. _____

2 1 1

2 1

, 1 1

3

83 4(_____)

7

83 5(_____)

6

1

2 7

83 6(_____) 8
3 5 1

8
3 3 1 1

< _____ >

< _____ >

< _____ >

< _____ >

_____ .
_____ .
83 7(_____) 8
3 5
_____ 83 19 1 2
_____ .

83 8(_____)
_____ .

83 9(_____)
_____ .

1. 22 1
22 2
_____ .

2 _____ , _____ , _____ ,
_____ (_____)
_____ ,
_____ ,
_____ .

3 _____ , _____ (_____)
_____ .

_____ . 297 _____ 301 _____ , 301
2 302 , 303 , 305
339
_____ .

83 10(_____)
_____ .

< _____ >

< _____ >

$$\begin{array}{r} \hline 83 \quad 9 \quad 1 \quad 3 \\ \hline 15 \quad , \quad 83 \\ \hline 9 \quad 2 \quad \quad \quad 2 \\ \hline \end{array}$$

83 11(_____)

1. _____ :

_____ 1 _____
2 _____ :

83 12(_____)

_____ 1 _____
_____ , _____

6 _____ .
_____ 1 _____
_____ 6 _____

_____ .

_____ .
5 _____
_____ 6 _____ .

< >

83 13()

83 19 1 1 3

1

< >

83 14()

83 3

83 9

< >

83 15()

1

< >

83 16()

83 9 1 3

83 9 2

83 9 2

83

9 1 3

< _____ >

< _____ >

< _____ >

_____.

83 17(_____)

42 1 1 3

83 18(_____)

1. 83 9 1 3

: 10

2 83 9 2 : 7

83 19(_____)

1.

2

3

4

83 3 1 1

3

< _____ >

83 20(_____)

83 19

83 21

< _____ >

83 21(_____) 83

19 1 1 3

5

5

83 19 1 2

83 19 1 4

7

9 1 3

5

83 19 2

1

5

< _____ >

83 22(_____) 83

19 1 2 4

2

1

< _____ >

83 23(_____) 8

3 19 1 1 3

< _____ >

83 24(_____) 83 19

< >

< >

84 ()

85 ()

1

86 ()

< >

87 ()

1. ,

1. 83 12 5

2

3

4

83 25() 83
12 5 ,

5

84 () () ()
()

85 ()

() .

86 ()

1

86 2()

87 ()

1. ()

2

5 _____ ,

3

5 _____

88 ()

, _____

90 (, , ,) 87

88
3 _____

()

105 (,)

5 _____ ,
10 _____ 700
.

106 (,)

1 _____ 1
_____ , 5 _____
200 .

107 ()

7 _____
—

5 _____
—

108 ()

5 _____

2 -----

3 -----

88 () -----

90 (, , ,) -----

()

105 (,) -----

106 (,) -----

107 () -----

108 () -----

_____ 3 _____

109 (,)

2 _____ 300
.

111 ()
1 _____

()

1
3 _____ 500

.

112 ()
3

_____ 500
.

114 () ()

_____ 1 500 10
.

2
_____ 10

115 () ,
1 10
_____ 1 500

116 () ,

109 (,) -----

111 () -----

()

112 () -----

114 () ()
)

< >

115 () -----

116 () -----

_____ 5 _____
_____ 10 _____

171 (_____ , _____)
_____ 170
_____ 3 _____ 2
_____ .

173 2(_____)
_____ 172 1 , 172 2 1 ,
_____ 173 1 2
5 _____ 1 500
_____ .

_____ 1
_____ 7 _____
_____ 2 _____ .

189 (_____ , _____ , _____)
(_____)

185 _____ 187 _____ 3
_____ 2

203 (_____) _____ 5
_____ 2 1 _____

204 (_____) 198
_____ 203 _____ 10
_____ 2 _____

209 (_____) 207
_____ 208
_____ 10 _____
_____ 2 _____

220 (_____) 21
_____ 4 _____ 219
_____ 10 _____
_____ 2 _____

171 (_____ , _____) -----

173 2(_____) ---

189 (_____ , _____ , _____)
(_____)

< _____ >

204 (_____) 198 202
_____ 2 _____
_____ .

209 (_____) -----

220 (_____) -----

230 ()

2 _____ 500

233 () ,
,

_____ 3 _____
, 7 _____ 3

236 ()

_____ 1 _____
300

237 () 225 2

27 2
_____ 10

238 (,)
()

_____ 2 _____ 7

245 ()

_____ 1 _____ , 500 _____

246 (,)

500 _____

()

248 () ()

_____ 1 _____ 500

-----.

230 () -----

233 () -----

236 () -----

< >

238 (,)
()

< >

245 () -----

246 (,) -----

()

248 () ()
)

256 () 250 , 252

 253

 10

 —

257 (,)
 7 _____ , 10
 _____ 1

()

260 (,)
 2 _____ , 5
 00 _____

()

264 () 257 , 258

 , 260 261

 2 1

265 () 257 2 ,

 258 , 260 2 , 261

 10

266 ()
 _____ 500

()

267 ()
 2 _____
 700

268 ()
 5 _____ 2

270 (,)
 ()
 _____ 3 7

< >

257 (,) -----

 --

()

260 (,) -----

 --

()

< >

< >

266 () -----

()

267 () -----

268 () -----

270 (,)
 ()

< >

279 () 276 2
77

280 () 4

281 () 276
280

1

3

276 280
2

5

282 () 10

283 (,)
3 , 500

()

285 () 283 1 ,
2

2 1

286 () 3

288 (3 () , ,)

2 2

289 (() , ,)

2 5

< >

280 () 276 278

281 () 276
278 280

-- 276 278 280

< >

283 (,)

()

< >

286 () 283 284

288 (3 () , ,)

< >

289 (() , ,)

< >

293 ()
 2 10
 , 3

295 () 288
 , 289 , 292 , 293
 10 2

296 () 288 1 , 292 1
 293 2
 , 291

304 ()
 2
 500

305 2() 297
 300 , 302 , 303
 305
 2 1

306 () 297 300 30
 2 305

307 ()
 2
 500
 5 , 10
 1

308 ()
 500 2

293 (, ,)
 292
 2 10

295 () -----

 -----2-----

296 () -----
 -----293-----

< >

< >

306 () 297 300 ,
 302 , 303 305 -----

307 () -----

308 () -----

309 ()
 ,
 307 1
 3 _____ 700
 .

1 307 2
 7 _____ , 10
 _____ 1 500
 .

311 () _____ 200 1
 .

316 ()
 ,
 3 _____ 500
 .

()

317 () , ,
 , , , , ,
 , , , , ,
 3 _____ ,
 10 _____ 700
 .

()

325 (,)
 7 _____ 10

()

331 2()
 , ,
 3 _____ , 500 _____
 , _____ .

-----.

309 () -----

311 () -----

316 () -----

()

317 () -----

()

325 (,) -----

()

331 2() -----

332 () 329
331 2
2 1 .

341 () 333 , 334
336 1
10

342 () 329 341
.

344 () 328
329 332

345 ()
10

348 2()
,
3 , 500
.

351 () 347
2 1

352 () 347 348
2 350 351
.

353 () 10

358 () 3 1
0

360 () ,
1 300

< >

< >

342 () 329 331
331 2 333 340
-----.

344 () -----
329 331 331
2-----

< >

348 2() -----

< >

352 () -----
-- 350 -----
-----.

< >

< >

360 () -----

-- -----

()

363 ()

1 10

1 10

1 500

—

364 (,)

362

1 500

.

365 () 3

328 1 , 2

3 328

1

()

< >

364 (,) -----

365 () 362 3

64 -----

362 364 -----
